

지정문화재 표석의 건립과 일제강점기 석표의 처리(1961-1996)

김명선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Establishment of “*Pyoseok* (標石)”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nd Management of “*Seokpyo* (石標)”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Era from 1961 to 1996

Myungsun Kim
Division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요약 조선총독부는 1933년 공포한 「조선의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통해 식민지조선의 가치 있는 유산을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종별하여 지정하고 번호를 부여했다. 또한 1938년경부터 광복 직전까지 이들의 존재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석표’를 설치했는데, 이는 보물 등의 보존·관리 방안의 일종이었다. 광복 후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일제강점기의 「보존령」을 대체하고 이후 문화재가 지정된다.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제강점기 석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본 후 동법 제정 이후에 석표를 대신하여 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으로서 ‘표석’을 세우는 과정과 표석양식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대한민국 공문서를 분석했는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이들 공문서가 생산된 1961년부터 1996년까지이다. 연구 결과, 1961년 석표를 처리하는 행정절차와 처리의 의도를 밝히고, 1964년-1974년 문화재 표석 설치를 위한 4단계 행정절차를 정리하며, 1964-1996년 공문서와 법령에 실린 표석양식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 연구결과는 1961-1996년 우리정부의 문화재 보존관리방식의 일면을 이해하고 당시 건립된 표석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In 1933, the Choseon Governor-General's Office classified colonial Korea's valuable heritage. Stone markers known as '*seokpyo* (石標)' were installed from 1938 until just before the National Liberation to indicate their presence and location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of 1962 replaced the colonial-era preservation ordinance, designating cultural properties. This study analyzed the pre- and post-enactment processes regarding *seokpyo* and their replacement with '*pyoseok* (標石)' for cultural properties. Using official documents from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61-1996), it examine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intentions in 1961. It outlined a four-stage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installing cultural heritage *pyoseok* (1964-1974) and tracked the changes in *pyoseok* style in official documents and legislation (1964-1996).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evolving policies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underscoring the significance of *pyoseok* in preserving historical heritage.

Keywords : *Seokpyo*, *Pyoseok*, *Pyoseok* Styl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ve Procedure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nforcement Rule

*Corresponding Author : Myungsun Kim(Sunmoon Univ.)

email: rosaria@sunmoon.ac.kr

Received February 14, 2024

Accepted May 3, 2024

Revised April 9, 2024

Published May 31, 2024

1. 서론

2006년 11월 21일 충남 예산군 대술면 꺾곡리에서, 연이어 그해 12월 17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마을에서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비석”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나온다[1,2]. 전자는 구릉지 수풀에서 발견되었고(Fig. 1의 우측) 후자는 땅 속에 두 기가 묻혀 있다가 발굴되었다(Fig. 2). 이들은 조선총독부가 황새 번식 영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후 세운 ‘석표(石標)’였다[3].

조선총독부는 1933년 8월 9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제령 제6호,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33.8.9., 이하 「보존령」)을 제정하고 ‘가치’ 있는 식민지 조선의 유물을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이하 ‘보물 등’)로 종별(種別)하여 지정한 후 명칭과 번호를 부여했다. 그리고 1938년경부터 광복 직전까지 보물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석표를 건립했다[3]. 그런데 남아있는 석표가 드물어서 그 발견·발굴이 기사화될 정도였던 것이다.

석표는 보물 등의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보물 등의 존재를 인지시키고 부주의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세운 표식으로, 조선총독부가 취한 보물 등의 보존·관리 방식의 하나였다[3].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 등과 광복 후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여럿 축적되고 있는데, 대부분 정책·제도의 형성이나 변화에 집중하는 편이고[4-9], 보존·관리를 다루더라도 건조물의 보존처리나 수리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10,11]. 그런데 최근 일제강점기 석표를 다룬 연구가 나왔다[3]. 이 연구에 따르면 1938년경부터 광복 직전까지 석표가 건립되었고, 석표 건립을 위해 조선총독부 학무국(이하 ‘학무국’)과 각 도(各道) 사이에 4단계 행정절차를 밟았으며, 학무국은 석표의 형식을 통일하기 위해 ‘석표양식(樣式)’을 정하고 석표 건립공사 방법으로 ‘석표사양(仕樣)’을 마련하여 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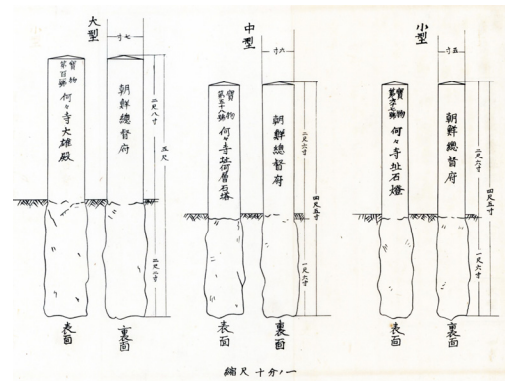


Fig. 3. ‘Seokpyo style’ of the Choseon Governor-General's Office

source: [3]

에 배포했다.

Fig. 3이 그 석표양식인데, 윗면을 납작한 사면체로 깎은 길쭉한 직육면체의 화강석을 땅에 세우고 전면에 보물 등의 지정종별·번호·명칭을, 배면에 ‘조선총독부’를 한자 세로쓰기로 각자(刻字)하도록 하고 땅위로 드러나는 비신 높이와 사방 폭 그리고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정했으며, 대형·중형·소형 3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 예산군의 석표는 발견 당시 배면 글자가 날카로운 도구로 쪼여져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Fig. 4 좌측) 음성군 석표의 배면 글자는 비교적 뚜렷했지만(Fig. 4 우측) 석표 자체가 매장되어 있었으므로 둘 다 훼손이 가해진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렇듯 석표가 훼손되고 거의 남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광복 후 한국정부는 문화재의 존재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어떤 형식의 표식을 하였을까? 본 연구는 자료가 허락하는 한에서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정부



Fig. 1. *Seokpyo*(right) of red-crowned crane breeding ground in *Yesan, Chungnam* (2006)

source: [1,3]



Fig. 2. Excavation of *seokpyo* for red-crowned crane breeding ground in *Eumseong, Chungbuk* (2006)

source: [2]



Fig. 4. Back views of *seokpyo* for red-crowned crane breeding grounds in *Yesan* (left) and *Eumseong* (right)

sources: author's photography, 2023.8.7.(left), 2023.9.7.(right)



Fig. 5. Stele of state preceptor Jigwang at Beopcheonsa Site, Wonju

source: [13]



Fig. 6. Village forest of Seongnam-ri, Wonsoeng

source: [14]



Fig. 7. Village guardian forest of Seongnam-ri, Wonsoeng

source: [13]

공문서(이하 ‘공문서’, 1961-1974))와 관련 조문이 실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1983-1996)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남아있는 공문서의 생산시기와 법령에 관련 조문이 실리는 기간을 포괄하는 1961년부터 1996년까지이다.

2. 일제강점기 석표의 상태 및 처리 (1961년)

광복 후에 일제강점기 건립된 보물 등의 석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문서는 1961년 강원도의 것만 남아 있어 제한적이지만, 이를 통해 당시 일제강점기 석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처리를 추동한 석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2.1 일제강점기 건립된 석표의 처리

「문화재보호법」 제정(법률 제961호, 1962.1.10.)을 7개월 여 앞둔 1961년 5월 26일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은 관할 시·구 교육감에게 「지정문화재 표석 정정에 관한 건」(이하 ‘건1’)을 발송한다[12]. 관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석표 배면에 ‘조선총독부’ 각자는 “대부분 삭제”된 상태지만 미삭제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말미에 이 건의 발송 사유를 문교부장관의 통첩(이하 ‘건0’)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이 건을 접수한 원주시 원성교육구 교육감 직무대리(이하 ‘원성교육감’)는 그해 6월 7일 관내 각 국민학교(26개교, 1개 분교 포함)장(長)에게 「지정문화재 표석 정정 협조에 관한 건」(이하 ‘건2’)을 발송하면서 발송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적었다[12]. 즉, “8.15 해방”과 더불어 ‘조선총독부’ 각자는 “대부분” 삭제되었으나 일부는 존치하여 “외국인 및 기타 관람객이 보는데 수치스럽다는 문

교부장관의 통첩”에 의거해서라고 했다. 앞서 건1에서 “시정조치”란 곧 ‘조선총독부’ 각자를 삭제하라는 뜻을 알 수 있다.

건2를 접수한 원성교육구 관내 국민학교장들은 일제히 원성교육감에게 「지정문화재 표석 정정 협조에 관한 건」(이하 ‘건3’)을 발송하고[12], 이를 접수한 원성교육감은 그해 6월 19일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에게 「지정문화재 표석 정정에 관한 건」(이하 ‘건4’)를 통해 “8.15 해방과 더불어 전부 삭제되어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보고한다[12].

정리하면 교육부장관의 통첩(건0) →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의 건1 → 원주시 원성교육감의 건2 → 원성교육구 관내 국민학교장들의 건3(26개) → 원성교육감의 건4가 차례로 생산된 것이다(수신자 생략). 아쉽게도 일련의 행정처리에 시발점이 되었을 문교부장관의 통첩(건0)과 건4를 접수한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이 교육부장관에게 했을 최종보고(건5)가 남아 있지 않아서 교육부장관이 전국 각도에 통첩을 내렸는지 여부와 강원도 전역의 석표 상황은 어떠한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제강점기 석표를 취급하는 방식과 석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는 있다.

2.2 일제강점기 건립된 석표의 상태

2.1에서 원성구 국민학교장들이 발송한 건3(26개)에서 통학구역 내에 지정문화재가 없다는 보고가 24개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두 건의 발신자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2].

- 1) 부론국민학교장: 국보 제315호 표석 후면에 각자 된 부분을 삭제함(징으로 쪼았음).
- 2) 신흠국민학교장: 천연기념물 제92호와 제93호가 있으나 석표는 없고 입간판이 있음.

1)의 국보 제315호는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碑, 2010년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原州 法泉寺址 智光國師 塔碑)’로 명칭 변경)’로(Fig. 5), 부론국민학교(현재 부론초등학교)가 소재한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에 있다. 2)의 기념물 제92호는 ‘원성 성남리의 수림지(原城 城南里의 樹林地)’이고(Fig. 6) 천연기념물 제93호는 ‘원성 성남리의 성황림(原城 城南里의 城隍林)’인데(Fig. 7), 둘 다 신림국민학교(현재 신림초등학교 성림분교)가 소재한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에 있다. 수림지는 ‘보존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1972년 8월 14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었고[15], 나머지 둘은 여전히 문화재인데 2021년 11월 문화재번호는 폐지되었다.

1)의 주요 내용은 부론국민학교장이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의 석표를 조사하니 그 배면에 ‘조선총독부’ 각자가 뚜렷한 상태라 정으로 쏘아냈다는 것이다. 2)의 주요 내용은 수림지·성황림에는 모두 석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1)과 2)의 석표가 1939년 1월 29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각도지사 앞으로 보낸 통첩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석표에 관한 건(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ノ石標ニ關スル件)」에 등장한다[16]. 이 건에는 당시 석표 건립대상인 보물 등을 나열한 표(Fig. 8)가 들어 있는데, 이 표를 통해 1)과 2)의 세 가지 대상은 일제강점기에 보물 제315호, 천연기념물 제92호, 제93호로 지정되었다는 점과 각각 석표 한 기씩 세울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1)의 보고를 통해,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주위에

구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보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국보 제315호
천연기념물	원성 성남리의 수림지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제92호
천연기념물	원성 성남리의 성황림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제93호

Fig. 8.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at Beopcheonsa, tutelary forest in Seongnam-ri, and wood land in Seongnam-ri as targets for seokpyo installing in 1939 (red square added by the author)

source: [16]

석표가 건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2)의 수림지·성황림에도 석표가 세워졌을 텐데, 1961년 조사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다. 서론에서 다른 충북 음성 석표의 경우처럼 땅에 묻거나 아예 뽑아버리는 등의 처치가 조사 이전에 행해졌을 것이다.

정리하면, 1961년경 일제강점기 석표의 상태는 땅에 묻혔거나, 뽑혀서 유실되었거나, 세워져 있되 배면 각자는 삭제 혹은 그대로인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였다. 2.1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경우는 드물었지만 존재했기에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처리가 취해진 것이다.

3. 문화재 표석의 건립(1961-1996)

일제강점기인 1933년 제정된 「보존령」은 미군정(1945.9.2.-1948.8.15)이 제정·시행한 「이전 법령 등의 효력에 관한 건」(군정법령 제21호, 1945.11.2) 제1조에 따라 광복 후에도 유지되다가[17]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동 시행령은 같은 해 6월 26일, 동 시행규칙은 1964년 2월 15일 각각 제정·시행된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에 문화재 표석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은 한참 뒤인 1983년 9월 19일이다(자세한 내용은 3.2.1 참조)[18].

이 장에서는 남아있는 공문서를 토대로 법률에 표석 규정이 생기기 전과 후로 나누어 표석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표석양식을 살펴본다.

3.1 법률에 표석 규정이 생기기 전 표석 건립

3.1.1 표석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1964-1974)

이 시기 중에서 1964년, 1968년, 1971년, 1973년, 1974년 총 다섯 해에 생산된 12개 건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고[19-25], 이들 내용은 아래 네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가) 표석 설치현황·교체대상 조사·보고를 지시(도→시·군, 4개 건): 1968년 1개(전남)[19], 1971년 1개(경기)[20], 1974년 2개(강원)[21]·충남)[22]
- 나) 표석 설치현황·교체대상·비용 조사 후 보고(시·군→도, 4개 건): 1968년 1개(곡성군→전남)[19], 1971년 1개(인천시→경기)[20], 1974년 2개(명주군→강원도)[21]·(당진군→충남)[22]

다) 표석 설치·교체 예산을 배부

(도→시·군, 2개 건): 1964년 1개(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감→관할 9개 군 교육장)[23], 1973년 1개(경북→경주시 및 10개 군)[24]

라) 표석 설치·교체 완료 보고

(시·군→도, 2개 건): 1964년 1개(원성군 교육장→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감)[23], 1973년 1개(경산군→경북)[25]

그런데 네 범주는 곧바로 표석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된다. 즉, 가)도가 관할 시·군에 표석 설치현황·교체대상·비용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 → 나)시·군이 도에 조사보고 → 다)도가 관할 시·군에 표석 교체·신규설치를 위한 보조예산 배부 및 설치 후 보고할 것을 지시 → 라)시·군이 도에 설치보고 순의 4단계 절차이다.

그런데 이 4단계 행정절차는 일제강점기 보물 등의 석표 건립을 위한 4단계 행정절차인 ㄱ)학무국이 각도에 석표건립 대상인 보물 등을 고지하고 석표설치예산을 조사·보고할 것을 요청 → ㄴ)각도가 학무국에 조사·보고 → ㄷ)학무국이 각도에 석표설치예산 배부를 고지하면서 설치완료 후 보고할 것을 요청 → ㄹ)각도가 학무국에 설치완료보고와 거의 같다[3]. 차이는 주관 부서가 학무국 및 각도에서 각도 및 관할 시·군으로 달라진 점과 기존에 설치된 표석을 교체하는 업무가 추가된 점이다.

3.1.2 표석양식(1964)

다) 사례 중 「지정문화재 표석 교체비 보조」(강원, 1964)[23]에는 “표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별첨 도면과 같이 규격을 정하였으니 규격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적혀 있고 표석 제작용 도면이 별첨되어 있다. 즉, 이 도면이 1964년 사용된 ‘표석양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원본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작은 글씨는 알아볼 수 없는데, 도면에는 1/10 축척으로 표석 입면도가 상·하단에 3개씩(정면도·측면도·배면도) 그려져 있다. 그중 3개 입면도를 확대한 것이 Fig. 9이다. Fig. 9 좌측은 상단의 정면도인데, 표석의 땅 위·아래 부분 치수 및 새길 글자의 위치·규격을 제시한 표석양식에 해당한다. Fig. 9 중앙 및 우측은 하단의 정면도·배면도인데, 땅 위로 올라오는 표석 부분만 그려져 있고 “보기” 즉, 예시도에 해당한다. 정면에 “국보 제4호 고달사지 승탑(國寶 第四號 高達寺址 僧塔)”, 배면에 “대한민국(大韓民國)”을 한자 세로쓰기로 새기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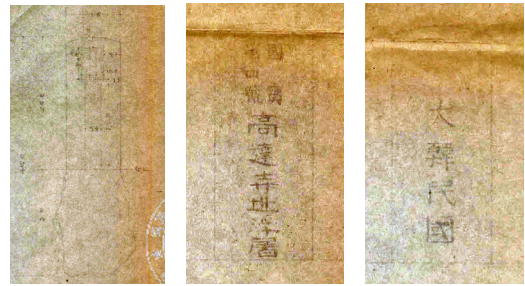


Fig. 9. Three drawings out of ‘Pyoseok blueprint’ (1964)

source: [23]

Fig. 10은 Fig. 9 좌측의 양식을 토대로 표석 두 기를 건립한 직후에 찍은 사진으로, 라) 단계 1964년 강원도 원성군 교육장이 보낸 건에 실려 있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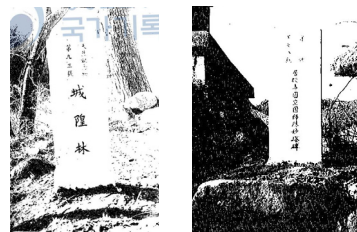


Fig. 10. Front View of pyoseoks for natural monument No.93 (left) and cultural treasure No.78(right) (1964)

source: [25]

Fig. 10 좌측은 2.2에서 살펴본 대로 1961년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석표가 없어졌다고 보고된 천연기념물 제 93호 원성 성남리의 성황림에 새로 설치한 표석이다. Fig. 10 우측은 보물 제78호 원주 거둔사 원공국사 승모탑비(居頓寺 圓空國師 僧帽塔碑)의 표석인데, 이 탑비는 2010년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原州 居頓寺址 圓空國師塔碑)’로 명칭 변경되었고 문화재번호는 2021년 폐지되었다.

3.1.3 표석양식(1973-1974)

앞서 3.1.1의 절차 중 가)단계에서 표석 “현황” 사진을, 다) 단계에서 표석 “설치결과”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도가 관할 시·군에 지시했다. 따라서 시·군이 보낸 나)와 라) 단계 보고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나)단계에서 사진을 첨부한 경우는 없고 표석 입면 (Fig. 11)을 그려 넣은 한 건이 있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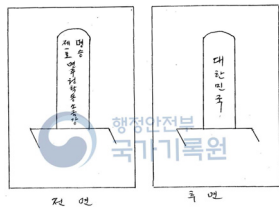


Fig. 11. *Pyoseok* for designated Scenic site No. 1 Cheonghak-dong Sogeumgang (1974)
source: [21]

한편 라) 단계 보고 두 건에는 모두 사진이 첨부되었다. 그런데 다) 단계에서 “설치결과”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였으므로 Fig. 10처럼 설치한 사진을 첨부한 것은 1964년 강원도 원성군의 보고이고[23], 1973년 경북 경산군의 보고에서는 표석을 세우기 직전에 촬영하여 땅 아래 묻히는 부분까지 보이도록 했다[25]. Fig. 12는 그 중 하나로, 경북 경산에 있는 ‘보물 제562호 환성사(環城寺) 대웅전’ 표석의 전면과 배면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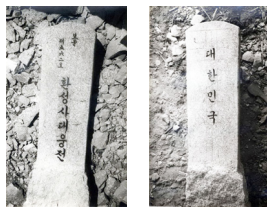


Fig. 12. Front and back views of *pyoseok* for Cultural Treasure No. 562 Hwansungsa Daeungjeon (1973)
source: [25]

한편, 다) 단계의 1973년 사례로 경북이 경주시에 보낸 「73년도 지정문화재 표석 설치비 보조 내시 및 보조 교부 결정」에는 표석 설치공사 시 주의사항 여섯 가지를 나열한 ‘지정문화재 표석 설치공사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다[24]. 그 주의사항 2번에서 “규격은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는 1촌각으로, 명칭은 2촌~2.5촌, 배면 대한민국은 2촌으로 하여 숫자는 한문, 그 외는 국문으로 음각한다”고 되어 있다. 1촌을 3.03cm로 보면 지정번호는 가로×세로 약 3cm×3cm, 문화재명칭은 가로×세로 약 6cm×7.6cm, 대한민국은 가로×세로 약 6cm×6cm로 정한 것이다. 주의사항 4번은 “석재 표면 다듬기마감은 도드라다듬하고 표면 모서리는 부드럽게 모건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표석의 각자 규격 및 형식 그리고 표면마감 및 모서리 처리를 확인할 수 있다. 엄밀하게 보면 이런 내용은 표석양식이 담아야 할 정보

인데, 이 건에는 1964년의 Fig. 9와 같은 표석양식 도면은 없고 시방서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3.1.2와 3.1.3을 정리하면, 법률에 표석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인 1964년 작성된 도면 및 사진을 통해 당시 표석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비신은 머리를 등글납작하게 깎은 원두형이고 땅에 묻히는 부분은 흙과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사방 약간 크게 하고 거칠게 마감했다. 비신 전면 상단에 문화재 종별·번호를, 하단에 문화재명칭을 새기고, 배면에는 ‘대한민국’을 새겼다. 모두 한자 세로 쓰기로 했다. 국가기록원 자료로 확인되는 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표석양식이다. 1973-1974년 생산된 공문서에는 표석양식이 등장하지 않지만, 표석의 그림·사진·시방서를 통해 이때도 양식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사진과 시방서를 1964년 표석양식(Fig. 9)과 비교하면, 형태는 원두형을 유지했고 전면의 문화재번호만 한자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글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석표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문화재 표석 규정이 생기기 전에 표석을 건립할 경우 4단계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행정주체는 달랐지만 일제강점기의 그것과 절차·내용은 같다. 또한 표석양식이 존재했는데, 형태는 일제강점기 석표양식과 전혀 다르지만 전면에 문화재 종별·번호·명칭을 새기고 배면에 문화재 지정 주체를 새기는 형식은 같다.

3.2 법령에 표석 규정이 있는 기간에 표석 건립

3.2.1 ‘표석’ 규정의 신설 및 변경(1983-1996)

1983년 9월 1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문화공부부령 제77호)을 통해 표석 조문이 제14조로 신설되는데, 아래와 같다[18].

제14조 (표석)

- ① 표석은 국가지정문화재별로 관람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표석은 앞면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 및 명칭을 기재하고 뒷면에 지정기관명과 지정일자 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표석의 글자는 한글로 쓰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뒷면의 지정기관명은 한글로만 써야 한다.
- ④ 표석의 규격과 형태는 별표4와 같다.

위 제14조제4항이 말하는 별표4가 Fig. 13인데, 표석의 규격 및 형상과 새길 “글자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Fig. 13의 별표4는 2년 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문화공부령 제86호, 1985.5.18. 개정·시행)에서 Fig. 14로 바뀐다. 그런데 “글자의 크기” 중 “(1)종별 및 번호”가 8cm×8cm에서 3cm×3cm로 축소된 것만 달라졌다. ‘개정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2)문화재 명칭”보다 더 큰 “(1)종별 및 번호” 글자로는 새김 글자들 간의 균형감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후 동 시행규칙은 4차례 개정되지만 해당 조문과 1985년 별표4(Fig. 14)는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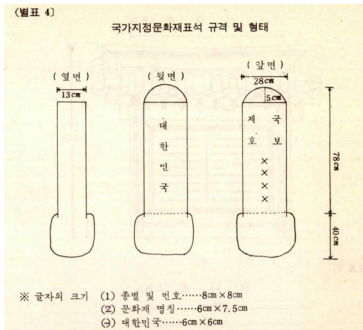


Fig. 13. Appendix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1983)
sourc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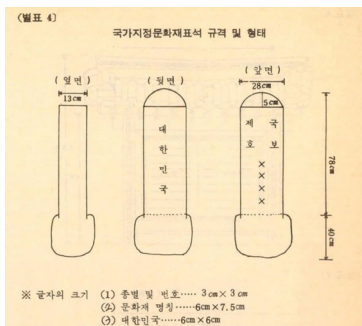


Fig. 14. Appendix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1985)
source: [26]

3.2.2 표석 건립과 표석양식(1983~1996)

표석 규정과 양식이 법령에 포함된 시기에 생산된 공문서는 네 건 남아 있는데, a)문화재관리국이 서울 4대 궁궐 등에 있는 문화재에 표석을 설치하기에 앞서 1985년 8월 국장 내부결재로 시행한 「지정문화재 표석 설치공사」[27], b)충북도지사가 1986년 3월 19일 청주시에 발송한 「지정문화재 표석 정비 및 설치 추진 지시」[28],

c)경기도지사가 1986년 11월 10일 부천시와 동두천시에 발송한 「지정문화재 표석 정비 및 설치 추진지시」[29], d)1986년 전남 장흥 보림사(寶林寺) 보수공사 후 세울 표석의 「정면도·배면도·측면도(지정문화재표석)」이다[30].

모두 문화재 표석의 형태·규격과 각자의 크기·위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a)는 방한지에 손으로 작성되었고(Fig. 15), b)와 c)는 동일한 도면의 인쇄지이며(Fig. 16), d)는 공사용 도면인데 Fig. 17이 도면 중앙의 입면도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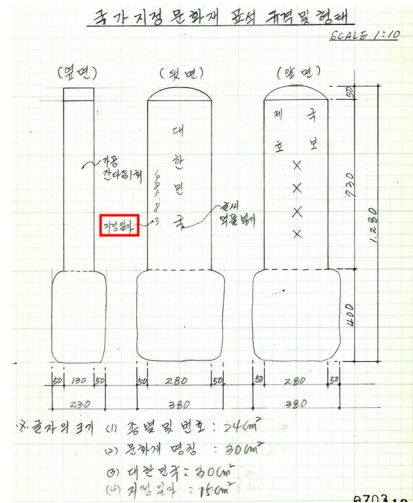


Fig. 15. ‘Specifications and form of *pyoseok* for designated national cultural heritage’ (1985) (red square added by the author)
source: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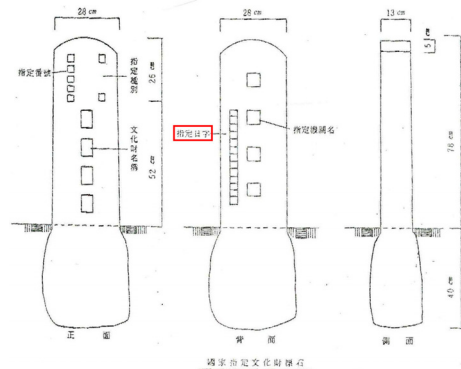


Fig. 16. ‘*Pyoseok* for designated national cultural heritage’ (1986) (red square added by the author)
source: [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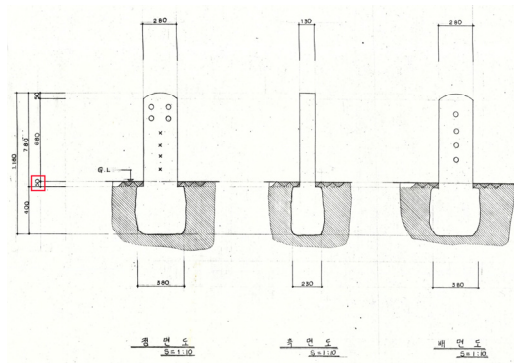


Fig. 17. 'Front elevation, rear elevation and side elevation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pyoseok*)' (1986) (red square added by the author)

source: [30]

세 도면을 비교하면 표식의 형태가 원두형으로 같고 규격도 같으나(지면 위 폭280mm×높이130mm, 지면 아래 사방 5cm씩 키워서 폭380mm×깊이230mm) 제시되는 정보와 표현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Fig. 15(1985)는 궁궐 등에 있는 문화재에 세울 표식의 총물량 및 총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땅속에 묻히는 부분의 치수까지 가장 상세히 적었다. 또한 전면 좌측에는 문화재 지정날짜(Fig. 15의 붉은 네모 안)를 새기고 글자에는 “먹물 넣기”를 하고 표면을 “잔다듬 1회” 하라고 했다. 또한 “글자의 크기”를 가로×세로 형식이 아니라 면적으로 제시했다. 모두 법령의 양식(Fig. 14)에 없는 정보이거나 표현방식이다.

Fig. 16(1986)은 b)와 c)에서 도지사가 관할 시·군에 보낸 것인데, 전면에 문화재 지정날짜(Fig. 16의 붉은색 네모 안)를 새기도록 했다. 그런데 b)나 c)에 의하면 Fig. 16은 “표준규격이 아닌 표식은 철거”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했다[28,29]. 즉, 당시 별표4(Fig. 14)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ig. 16은 별도의 표식양식 역할을 한 셈이다. 한편 Fig. 17(1986)은 비신의 하단 50mm(Fig. 17의 붉은색 네모 안)를 땅에 묻히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폭우 등으로 흙이 휩쓸려나가도 땅속 표식의 거친 부분이 지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의도한 것으로, 경험과 실무적 판단이 개입된 도면이다.

그런데 a)-d)의 생산시기를 고려할 때 이들 건에는 1985년 5월 개정된 별표4(Fig. 14)를 첨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간단한데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물량 산출, 철거를 포함한 기존 표식의 정비, 문화재수리 현장에 설치 등 필요에 맞추어 정보를 표시하고 표현을 달리

하여 도면을 작성하였다. 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표식양식이 있음에도 해당 양식은 실무에서 적극 사용되지 않았다. 별표4는 198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기에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1996년 7월 10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표식 관련 조항(제14조)과 표식양식에 해당하는 별표4이 삭제된다. 이때 제시된 ‘개정이유’는 “문화재의 표식·안내판 및 경고판의 규격과 형태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이었다[31]. 이로써 법제화된 표식양식의 시대는 끝나게 된다.

4. 결론

1961년 문교부장관의 통첩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 등에 세워진 석표의 배면에서 ‘조선총독부’ 글자를 지우는 행정처리가 있었다. 이 처리는 석표를 식민 지배의 흔적으로서 수치스럽게 여긴 데서 비롯되었다. 그런데도 석표는 그대로 두고 건립주체 글자만 삭제하는 소극적인 처치에 머물렀다. 이는 당시가 더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3장에서 언급한 대로 광복된 그해 11월 발표된 「이전 법령 등의 효력에 관한 건」을 통해 일제강점기 「보존령」의 효력이 연장된 상태였다. 따라서 보물 등에 딸린 석표 역시 적어도 공적인 차원에서는 매몰하는 등 적극적인 처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늦어도 1964년부터 우리 정부는 문화재 표식을 건립했다. 일제강점기의 석표와 용도는 같지만 그 명칭을 달리하고 양식도 전통적인 원두형을 취하며 글자도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등 고유성과 독자성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반면 유사점도 있었는데, 표식 건립을 위한 4단계의 행정처리 절차와 각 절차의 내용 그리고 표식에 각자하는 내용과 형식이 그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석표 건립 행정절차와 석표양식을 참조했으리라 짐작된다.

1983년에는 표식양식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수록됨으로써 표면적으로 양식의 통일성과 강제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1984-1985년의 경우를 보건대, 현실에서 표식양식은 그저 준용되는 정도였고 그때그때 필요에 맞추어 도면이 작성되거나 또 다른 도면이 양식처럼 활용되었다. 이는 표식양식의 정보와 표현정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몇 차례의 규칙개정을 통해서도 양식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규칙에서 표식양

식이 삭제될 때까지 석표를 건립하고 정비하는 실무에서 상황은 유사했을 것이다.

한편, 국가기록원 소장 공문서에서 표석 설치공사의 일관성과 설치된 표석의 구조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석사양이 표석의 외관을 규제하는 표석양식과 쌍을 이루어 제시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표석을 문화재 주변에 설치한 후에 그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나 도면을 작성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자료화하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도 마찬가지다. 물론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30여 년간 건립된 표석과 관련 공문서가 당대의 문화재 보존·관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식민지 시기의 영향과 그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담긴 역사자료임에는 틀림없다.

References

- [1] "Discovery of 60-year-old red-crowned crane monument", *Jungbumaeil* 2006.11.21, Available From: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accessed Dec. 20, 2023)
- [2] "Excavation of red-crowned crane breeding ground monument in *Eumseong, Chungbuk*", *YTN* 2006.12.17, Available From: https://www.ytn.co.kr/_pn/0933_200612161651274352 (accessed Dec. 20, 2023)
- [3] M. S. Kim,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Establishing Stone Marks for National Treasures, Historic Sites,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and their Styles by the Korean Governor-General's Office (1938-1945)", *Chungcheonghak & Chungcheong Culture*, Vol.35, pp.241-270, Dec. 2023. DOI: <https://doi.org/10.52639/jeah.2019.03.46.367>
- [4] H. Kang, *A Study on Architectural Conservation during Japanese Ruling Era of Korea*,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73-111, 2005.
- [5] J. K. Kim & E. K. Park, "A study on the Policy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during 1987-1945",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1, No.7, pp.123-131, July 2005.
- [6] S. J. Lee,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e Investigations of Historical Sites*,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orea, pp.88-195, 2021.
- [7] C. Y. Oh,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unhwajae* Vol.15, No.1, pp.100-124, March 2018. DOI: <https://doi.org/10.22755/kichs.2018.51.1.100>
- [8] J. H. Park, *A Study on the Legal System and Realization Scheme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Ph.D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pp.61-81, 2008.
- [9] J. S. Kim, *A Study on Establishment of Korean Cultural Property System*, Ph.D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pp.144-233, 2020. DOI: <https://doi.org/10.22755/kichs.2020.53.1.64>
- [10] H. J. Cho, *A Study of Conservation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Yongin, Korea, pp.23-47, 2004.
- [11] H. W. Seo, *Exploring the Repair Works of Historic Wooden Architecture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61-138, 2018.
- [12] "Matter regarding the correction of *pyoseoks*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392440,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2, 2024)
- [13] Stele of state preceptor *Jigwang* at *Beopcheonsa* Site & Village guardian forest of *Seongnam-ri*, Available From: <https://www.cha.go.kr/main.html> (accessed Feb. 2, 2024)
- [14] Village forest of *Seongnam-ri*, Shared Square, Available From: <https://gongu.copyright.or.kr> (accessed Feb. 2, 2024)
- [15] "Deregistration of natural monument", *Deregistration of Natural monu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119392,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10, 2024)
- [16] "Matter regarding the *seokpyo* for national treasures, historic sites,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Document clip 2: national treasures, historic sites,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National Museum of Korea, Management No. H044-015 Available From: <https://www.museum.go.kr> (accessed Dec. 12, 2023)
- [17] J. S. Kim, *Birth of Korean cultural property system*, Minsokwon, Korea, p.176, 2020.
- [18]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Compilation of law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Korea, p.117, 1983.
- [19] "*Pyoseok* survey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092801,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10, 2024)
- [20] "Status report on the *pyoseok* installation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relationship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098957,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10, 2024)
- [21] "Status report on the *pyoseok* installation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urvey of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162232,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10, 2024)
- [22] "*Pyoseoks*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Wonseong-go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392366,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2, 2024)

- [23] "Pyoseok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Wonseong-go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392366,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2, 2024)
- [24] "Decision on subsidy and grant for the installation pyoseok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in 1973",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182063,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10, 2024)
- [25] "Report on the pyoseok installation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in 1973",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182063,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10, 2024)
- [26]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Compilation of law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Korea, p.117, 1985.
- [27] "Restoration work on the Gwangneung Jeongjagak and the Seoreungjaesil", *Restoration work on the Gwangneung Jeongjagak and the Seoreungjaesil*,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122800,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15, 2024)
- [28] "Directing the maintenance and installation of pyoseok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226703,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15, 2024)
- [29] "Directing the maintenance and installation of pyoseok 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2-2)*,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BA0410066,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15, 2024)
- [30] "Front elevation, rear elevation and side elevation(for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pyoseok)", *Restoration Work at Borimsa in Jeonam*,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o. CB0005264, Available From: <https://www.archives.go.kr> (accessed Jan. 15, 2024)
- [31] Enforcement Rule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cree No. 29),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 (accessed Dec. 15, 2023)

김 명 선(Myungsun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 건축문화재, 건축리모델링